

October 15, 2026

[조세심판원 결정] 영세율 상호주의는 기본통칙 목록이 아닌 상대국 실제 VAT 법제로 판단 — 룩셈부르크 본사에 제공한 용역 과세는 위법 (2025서3901)

I. 조세심판원 2025 서 3901, 2026. 5. 18.

1. 사실관계

납세자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영업소로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면서 룩셈부르크 본사에 한국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제품의 마케팅·홍보 및 영업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납세자는 해당 용역을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과세관청은 해당 국가가 기본통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니고 자체적인 부가가치세 제도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

부가가치세법 제 25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관련 법령 6 차 EU 부가가치세 지침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룩셈부르크 소재 국내 법인의 지점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 소재 본점 법인에게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상호면세국에 룩셈부르크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처분청이 영세율 상호주의를 근거로 쟁점용역이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3. 시사점

조세심판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상호주의를 형식적인 국가 목록이 아니라 상대국의 실제 VAT 법제와 과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있다.

해외 용역거래에서는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명시적인 '면세(exemption)'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공급장소 규정 등에 따라 애초에 상대국의 VAT 과세권 밖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상대국 VAT 제도에 따라 반대 방향의 동일·유사한 거래에 실제로 VAT 가 부과되는지를 중심으로 상호주의를 판단하였다. 이는 상호주의 요건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종래부터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왔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 두 12718 판결),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결정은 해외 용역거래의 영세율 적용에서 형식적인 '상호면세국 목록'보다 상대국의 실제 VAT 법제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는 세법의 다른 이슈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법규적 효력이 없는 기본통칙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련 구성원

장성두

변호사

T 02.3404.6585

E sungdoo.j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